# "공장 등의 처분. 임대업무는 관리기관으로" 명 택 산 업 단 지 관 리 공 단

수 신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 문 용

(경 유)

제 목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체결 알림

1. 귀사에서 제출하신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42 - 5 번지상의 회사명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및 시행규칙 제 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변경체결을 알려드리오니 입주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될시에는 사전에 우리 관리공단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계약 변경체결 내용

구 분	회 사 명	대표자	용도별 구역	주요설치 시설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비고
변경전	㈜ 아 토	이문용	지원시설 구역	주차장	1,500.1	3,933.90	
변경후	㈜원익아이피 에스	이문용	지원시설 구역	주차장	1,500.1	3,933.90	

첨 부: 1. 평택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부.끝.

### 평 택 산 업 단 지 관 리 공 단 이 사장

업무계장 노 상 섭	업무과장 박 상 순	관리부장 오 영 환
협조자		
시행 업무과 - 66	(2011. 4.14) 접수	( )
우 659 - 040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3 - 2	http://www.picm.or.kr
전화 031) 611-9111	전송 031) 611 - 9110 (	) /공개
	"곳저하 수수료로 기언의 내식하"	

# 産業團地 入住契約書 (支援施設)

平澤産業團地 管理公團

## 입주계약서(지원시설)

####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42-5					
소 유 자	상호(법인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자 : 이문용					
면 적	대 지	1,500.1 m²				
7. 4	건 물	3,933.90 m²				

#### ○ 입주업체의 사업계획

상 호 (법인명)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자	이문용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용도별 구역	주차장	업 종			
건물면적	3,933.90 m²				

위 부동산에 관하여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분양(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포함)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합의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회원의 가입)"을"은 입주계약과 동시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의 회원업체가 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산업단지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과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정관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갑"의 지시에 응한다.

제2조(입주계약변경) "을"이 체결한 계약사항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새로이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업체의 업종 또는 사업내용
- ③ 부지면적
- ④ 건축면적
- 제3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법 제42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동부담금의 납부의무)"을"은 법 제37조 및 령48조와 정관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지니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한후 별도 고지키로 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불이행시 "갑"의 처분에 따른다.
-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지침에 의한다.
- 제6조 (해석) 본 계약서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 제7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8조 (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위 각조항을 준수하여 향후에 증명하고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후 각기 서명 날인 하여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 2011 년 4월 14일

"갑"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3-2번지

성 명: 사단법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인) 등

"을"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업체명: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자 : 이 문용